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 등>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60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80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Ⅰ. 이연희의원 대표발의(2206560)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Ⅱ. 문금주의원 대표발의(2206880) ····· 3

1. 제안경위 ·····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Ⅲ. 검토의견 ····· 5

1.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안 제8조의2, 제69조의2 등) ···· 5

Ⅰ. 이연희의원 대표발의(2206560)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희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Ⅱ. 문금주의원 대표발의(2206880)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안 제8조의2, 제69조의2 등)

가. 개정안의 내용

이연희의원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등에 관한 통합이력정보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이력 정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하며, 구동축전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이연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구동축전지 정보의 공개)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현 행	이연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력 정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정보의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제79조(벌칙)(현행과 같	제79조(벌칙) ----------

현 행	이연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1의2.·1의3. (생 략) 2. ~ 19. (생 략)	음)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의3.·1의4.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2. ~ 19.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의 사용이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1]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제작결함안내문 등 그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8조[3]에 따라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제69조의2[4]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

1) 「자동차관리법」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함)을 자동차소유자 등 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정보, 차종, 자동차 검사이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5)]

한편,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 전기차 화재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계
운행중	12	22	34	68
주차중	6	9	21	36
충전중	4	9	13	26
기타	2	3	4	9
합계	24	43	72	139

자료 : 소방청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들은 전기차 구동축전지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전(全) 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며, 재사용된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경우 사용이력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구동축전지의 용량, 최고출력 등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동축전지의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2월 2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법령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6)]

다음으로, 재사용된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 해당 배터리의 사용이력정보는 차량의 성능 및 운행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

6)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5년 2월 21일 시행예정)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6.>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용이력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全)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은 2025년 ISP 수립을 거쳐 2027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재사용 배터리 선별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또한 2027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배터리의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각 배터리별 식별번호가 부착되어야 하는데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7]이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립 되어 신규등록되는 차량부터 배터리 식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신차 판매 시 구동축전지 셀 제조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해당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25.2.21. 시행

7)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정)하여 기존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구동축전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준비중으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는 시기('27년 목표)에 논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자동차 제원표('25. 2. 21. 시행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자동차제원표

1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명				6	종별					
3	형식				7	유형					
4	차대・차체형상				8	구분					
5	승차정원(명)				9	용도					
10	차량중량(kg)			( )	22	원동기	사용연료				
11	최대적재량(kg)						내연기관	형식			
12	차량총중량(kg)			( )				최고출력(ps/rpm)			
13	차체제원(mm)	길이		( )				기통수/총배기량(cc)			
		너비		( )			구동전동기	형식			
		높이		( )				개수			
14	하대내측지수(mm)	길이						최고출력(KW/rpm)			
		너비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높이						형식			
15	하대옵셋트(mm)							개수			
								셀의 제조사			
								셀의 형태			
								셀의 주요 원료			
16	공차 시 하중 분포(kg)	전	전축	( )			연료전지	형식			
			후축	( )				개수			
		후	전축	( )				최고출력(KW)			
			중축	( )			하이브리드 시스템				
			후축	( )	23	연료소비율	항목 / 모드		복합	시가지	고속
17	적차 시 하중 분포(kg)	전	전축	( )			연비(km/ℓ,km/kwh,km/kg)				
			후축	( )			1회충전주행거리(km)				
		후	전축	( )	24	윤간거리(mm)		전	( )		
			중축	( )				후	( )		
			후축	( )	25	변속기		종류			
18	축별 설계 허용 하중	전	전축					단수			
			후축		26	타이어 형식	전	전축			
		후	전축					후축			
			중축				후	전축			
			후축					중축			
19	축간거리(mm)							후축			
20	제작허용총중량				27	구동방식					
21	모델연도				28	차대번호(1 ~ 8자리)					
29	자율주행시스템										
30	선택사양										
31	비고										

참고2	배터리 제원표(안) ('25. 시행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 일반 사항

제작자명		형 식	

2. 구동축전지의 제원

연번	구분	항목	제원
가	생산지		
나	구동축전지 셀	셀 제작자	
		셀 형태	
		셀 주요원료	
		셀 크기 (mm)	
		셀 용량 (Ah)	
다	구동축전지 모듈	모듈 제작자	
		모듈 정격 전압 (V)	
		모듈 정격 용량 (Ah)	
라	구동축전지 외관	구 조	
		형 상	
		크 기 (mm)	
		케이스	
마	구동축전지 전기규격	정격 전압 (V)	
		작동 전압 (V)	
		정격 용량 (Ah)	
		최대 전류 (A)	
바	가스 조합률 (%)		
사	자동차 탑재 시 사항	탑재 시 개요, 설치 방법 또는 도면	
		장착 구분	
아	열관리 형식		
자	전자적 제어 조건		
차	탑재될 차종		

작 성 방 법

1. 가목의 생산지란에는 구동축전지가 생산되는 생산지 주소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 나목의 구동축전지 셀의 셀 형태란에는 각형, 파우치형 또는 원통형 등을 기재합니다.
3. 나목의 구동축전지 셀의 셀 주요원료란에는 셀의 주요원료 구성[니켈 · 코발트 · 망간(NCM), 인산철(LFP) 등] 및 비율을 기재합니다.
4. 라목의 구동축전지 외관의 형상란에는 셀 개수 및 연결모드 등을 기재합니다.
5. 라목의 구동축전지 외관의 케이스란에는 구조, 재질 및 크기 등을 기재합니다.
6. 사목의 자동차 탑재시 사항의 장착 구분란에는 고정식 또는 교환식을 기재합니다.
7. 아목의 열관리 형식란에는 수랭식, 공랭식 또는 복합식 등을 기재합니다.
8. 차목의 탑재될 차종란에는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9.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붙임자료 참조'로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10.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

참고3 자동차등록증(안)(발췌) ('25. 2. 21. 시행예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자 동 차 등 록 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제작연월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 (명칭)		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 원

⑪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⑫ 길이	mm	⑬ 너비	mm
⑭ 높이	mm	⑮ 총중량	kg
⑯ 승차정원	명	⑰ 최대적재량	kg
⑱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	cc, (Ah), [Ah]		
⑲ 정격출력	Ps/rpm, (kW/rpm), [kW/rpm]		
⑳ 기통수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연료전지 최고출력]	기통, (V), [kW]		
㉑ 연료의 종류 및 연료소비율	km/L, (km/kWh), [km/kg]		
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유의사항 : ⑱~㉑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 ),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는 [ ]**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㉒~㉔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4. 검사유효기간

㉚ 연월일부터	㉛ 연월일까지	㉜ 검사 시행장소	㉝ 주행거리	㉞ 검사 책임자확인	㉟ 검사 구분